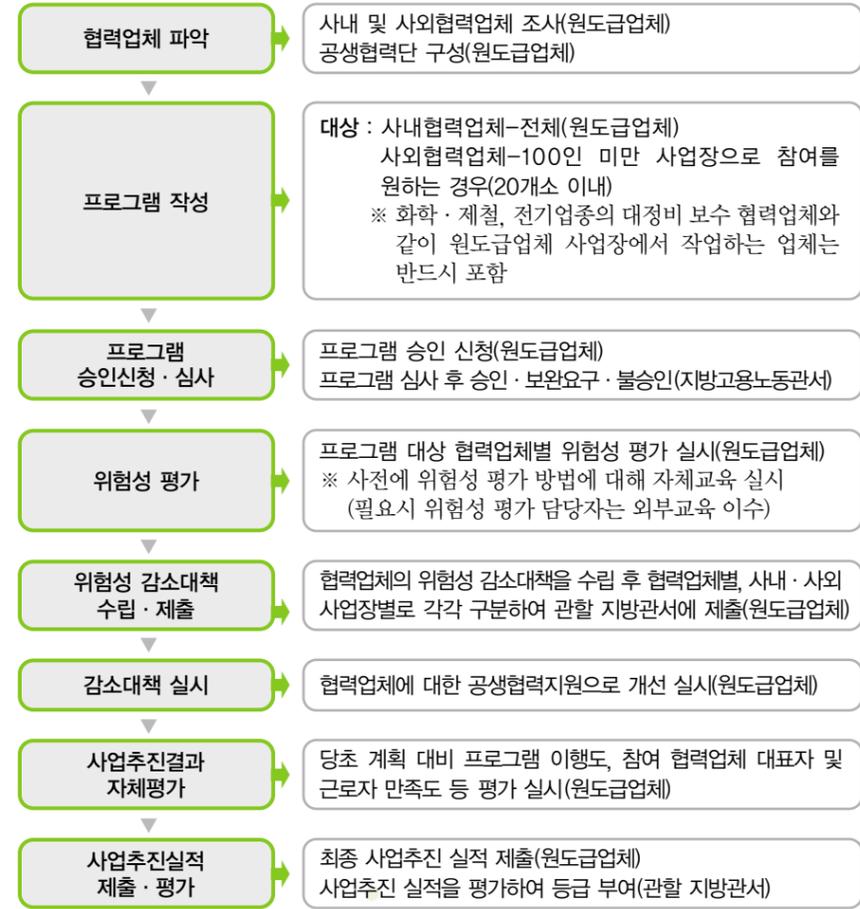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프로그램 지원기관 연락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동작구 노랑진동 179(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4, 15층)	02-828-1638
서울북부지도원	서울시 중구 칠패길 5(봉래동 1가 10, 우리빌딩 7, 8층)	02-3783-8315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103(온의동 513, 대한교원공제회관 2층)	033-815-1011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64-31)	051-520-0524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둔질로 146(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 4층	052-226-0523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중앙로 159(용호동 7-3)	055-269-0562
경남동부지도원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	055-371-7533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20
대구서부지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87-36) 성안빌딩 5층	053-609-0520
경북동부지도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	054-271-2043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054-478-8012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한빛로 15(가정동 491)	032-570-7255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128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16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번지 센트럴시티 웨딩홀 2층 위치	031-481-7539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금곡동 106-2) 소곡회관 2층	031-785-3313
부천지도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상3동 538-83)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42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무역회관빌딩 8, 9, 11층	062-949-8772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251(인후동 1가 807-8) 노동부종합청사 4층	063-240-8531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52
제주지도원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4-797-7505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042-620-5612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빌딩 3층	043-230-7123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20

대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발전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으로
 해결하세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사업이란?

대기업(원도급업체)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

- 업종 : 제조업, 대형유통업, 전기업, 통신업 등
 ※ 조선업은 「안전보건 이행평가제」, 건설업은 「건설업 안전보건 공생사업」에 따라 별도 추진
- 대상 : 500대 기업(매출액 규모)의 사업장(100인 이상) 및 협력업체(사내·사외)

프로그램 작성자 및 제출시기·서류·방법

- 작성자 : 원도급업체(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및 시행 포함)
- 제출 기간 : '13. 2. 15(금) ~ 2. 28(목)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세부추진계획 1부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 산재예방지도과(고용노동부 연락처 참조)

참여 사업장 혜택

-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가 주관업체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당 해년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받은 시간으로 인정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실시 관련 교육(위험성 평가 사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관련 회의)·세미나(사업추진 중간·최종 평가 등) 등
- 참여 협력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 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우선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 제도)
 ※ 채용자 1인당 최대 1년간 10,800,000원 지원
- 참여 협력업체에서 지원요청시 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사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비용 지원, 위험성 평가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
- 정부포상(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 등)시 우선 추천 및 가점 부여
- 지방청(지청)에서 승인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참여기간 동안 감독 유예



참고사항

용어의 정의

- “공생협력 주관업체”(이하 “주관업체”라고 함) : 대기업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사내협력업체 또는 사외협력업체)를 갖고 있는 원도급업체(최상위 도급(발주)업체)를 말함
- “협력업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대기업의 자회사 및 500대 대기업은 제외)
 - 도급계약 등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주관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가 생산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를 포함, 사내협력업체)
 - ※ 여러 사업장에 근로자를 용역, 파견하는 경우에는 각 주관업체의 협력업체에 각각 포함
 - 도급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주관업체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서 주관업체의 사업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수리·정비·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를 포함)
 - ※ 사무실 소재지가 사외에 있는 수급업체를 포함하되, 일회성이면서 단기간(1주 이내) 계약은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
 - 주관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 중간재 또는 서비스를 납품(제공)하는 업체(사외협력업체)
 - ※ 1차 수급업체가 납품하는 재료 또는 서비스가 수 차의 하도급에 걸쳐 완성되는 경우 해당제품이나 서비스가 주관업체에서 사용되는 것이 특정되어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하수급업체를 모두 포함

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공생협력 수행방법

제1유형

주관업체가 협력업체(사내협력업체 및 사외협력업체)와 함께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지원활동 전개
 ※ 사외협력업체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대상 포함 여부 및 그 범위는 도급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제2유형

주관업체가 협력업체 중 사내협력업체 및 「1차 사외협력업체」와 함께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되, 「1차 사외협력업체」는 해당 하수급 협력업체에 대한 공생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주관 업체는 이를 자신의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협력 지원 활동 전개



사업관련 Q&A

Q1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는 원도급업체의 범위는?

- A.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협력업체를 갖고 있는 100인 이상 각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승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예1) 500대 기업의 본사가 서울인 ○○제철의 100인 이상 사업장인 제2공장이 ○○지청 관내에 소재할 경우 프로그램 대상 사업장에 해당
- 예2) 본사가 동일 구역내 소재할 경우 본사에서 프로그램을 작성, 다만 사무적으로만 구성된 100인 이상 본사는 대상에서 제외
- 예3) ○○지청 관내에 500대 기업인 00마트 2개 지점 중 1개소는 100인 이상 1개소는 95인, ××플러스의 지점이 관내 1개소가 100인 이상일 경우 100인 이상인 2개 지점은 프로그램 대상 사업장에 해당

Q2 사무실이 사외에 있는 협력업체로서 도급작업이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본 프로그램의 의무대상인지?

- A. 사무실 소재지가 도급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유지보수 등 도급작업이 도급사업주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본 프로그램의 의무적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Q3 사업장에서 공생협력단 구성원과 활동내용은?

- A. 협력단은 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장, 공장장 등)를 단장으로 하고 협력업체 책임자 및 원도급업체 안전보건부서 책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 ※ 필요시 외부 전문가(교수, 지도사 등)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아 수행
- 협력계획 수립, 협력활동 수행, 모니터링·평가 및 제반사항 논의를 위해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Q4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외 협력·지원하는 사업내용은?

- A. 협력업체 작업현장에 대한 주기적 순회점검, 안전보건관리(개선) 지도·컨설팅(민간전문가 활용),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새로운 설비 도입·교체 및 안전보건장구 구입·활용시 안전보건지도(지원), 공중별 작업개시 전 안전작업절차서 작성·제출 지도, 사전평가를 통한 안전작업 유도 등이 있습니다.
- ※ 방호장치나 안전설비 설치·이전·변경 시 안전성평가·검사·구매 기술지도(지원), 안전보건장구의 적합성 평가, 공동구매 등 포함
- 협력방법은 제한하지 않으며 협력업체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협력·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은?

- A.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제출 일정은 원도급업체에서 공생협력 프로그램 작성시 정한 일정에 따릅니다만, 동 사업 일정상 5월 이내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프로그램 추진실적 평가 제출시기와 지방고용노동관서 평가 시기는?

- A. 관할 지방관서에서 11월중으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참여 사업장은 10월까지 사업을 완료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11.8(금)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12년 등급관리 A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절차는?

- A. '12년 평가결과 A등급 사업장은 프로그램 신청 접수로 완료됩니다.(심사는 면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1. 신청업체 현황

사업장명	근로자수		
소재지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산재보험 중업종)	매출액		백만원
전화번호(FAX)	생산품(보유설비)		
협력업체 현황	사내 : 개소(명) 사외 : 개소(명)	전년도 재해자수(사내 하도급업체 포함)	총명(사망 : 명, 부상 : 명)

2.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현황

연번	협력업체명	소재지	산재보험 중업종	근로자수	협력형태			재해건수			비고
					사내 하도급	납품	청소 용역 등	'12	'11	'10	

3. 공생협력사업 계획 개요

- 기업 최고 책임자(CEO)의 정책목표 및 의지, 추진 사업, 인적·물적투자계획 등

4.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인원(소속, 직책, 자격, 성명), 회의·활동일정 등

5.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 참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협력업체별 일정 포함)

6.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협력업체 협력·지원 계획

- 협력단 운영·활동, 협력·지원방법 등(일정 포함)
- ※ 세부 개선계획(위험성 감소 계획)은 위험성 평가 실시 후 5월까지 제출

7. 사업평가계획

- 프로그램 성실 이행도, 법규준수, 하청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등

2013. 2.

대표자

(서명)

협력업체 사업주

(연명 서명)

붙임 : 공생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3항' ~ '4항' 포함) 1부

제출기관 연락처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장교빌딩 1~6층, 9층	02)2250-5770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강남구 도곡로 408(대치동1024) 디마크빌딩 7~9층	02)3465-8498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0~11층	02)2142-8871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5층	02)2077-6176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구 선유로 120	02)2639-2278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강북구 한천로 949(변동 432-5)	02)950-9811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구로3동 222-30)	02)3281-5021
충북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 62번길 39(구월3동 1113)	032)460-4400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계산동 1077-1)	032)540-7983
부천고용노동지청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중4동 1032-2)	032)714-878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의정부시 충의로 143	031)850-7638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사옥 5, 6층	031)931-2870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천천동 575-5)	031)259-0252
성남고용노동지청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15(야탑동 135-1)	031)788-1571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	031)463-7350
안산고용노동지청	안산시 단원구 적곡로1길 26(고잔동 526-1)	031)412-1974
평택고용노동지청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 3~5층	031)646-1184
강원고용노동지청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033)258-3581
강릉고용노동지청	강릉시 경강로 1991(남문동 175-3)	033)650-2525
원주고용노동지청	원주시 만대로 59(무실동 1716-3번지)	033)769-0821
태백고용노동지청	태백시 황지동 변영로길 341	033)552-8603
영월고용노동출장소	강원도 영월군·읍 단종로 8	033)371-624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36(연산2동 1470-1)	051)850-6474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부산시 금정구 공단서로 12(금사동 107-1)	051)559-6647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덕포2동 761-2)	051)309-1556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 4(용호동 7-5)	055)239-6580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시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옥동)	052)228-1889
양산고용노동지청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58(석산리 1440-2)	055)387-0805
진주고용노동지청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	055)752-1752
통영고용노동지청	통영시 해미당로 107(무전동 356-130)	055)650-194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범어동 743)	053)667-6360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053)605-9156
포항고용노동지청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대잠동 940)	054)271-6830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시 3공단 1로 312-27(임수동 92-31)	054)450-3550
영주고용노동지청	영주시 원당로 68	054)639-1155
안동고용노동지청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054)851-80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6층	062)975-6330
전주고용노동지청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1가 807-8)	063)240-3399
익산고용노동지청	익산시 하나로 478(여암동 626-1)	063)839-0037
군산고용노동지청	군산시 조촌5길 44(조촌동 852-1)	063)450-0530
목포고용노동지청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상동 976)	061)280-0100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시 문수로125(문수동 111-1)	061)6500-13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둔산동 1303)	042)480-6303
청주고용노동지청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043)299-1311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8길 3	041)560-2865
충주고용노동지청	충주시 중원대로 3434(봉방동 21-38)	043)840-4036
보령고용노동지청	보령시 옥마로 42(명천동 58-6)	041)936-4545